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47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의자 : 엄태영 · 서천호 · 김재섭  
박덕흠 · 안철수 · 유상범  
박성민 · 강명구 · 김상훈  
이만희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균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